

## 교원 연구지원비 지급규정(3-6-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교원연구지원비는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전국학회 주관 학술대회 발표논문, 전공에 관련된 공연 및 전시 발표, 저서, 창작 및 전국학회 참석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말한다.(개정 '03.3.26, '07.9.1)(개정 2014.05.01)

② (개정 '03.3.26, '07.9.1)(삭제 2014.05.01)

③ 전국학회란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등록된 학회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 후보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로 한다.(신설 '07.9.1)(개정 2014.05.01)

**제3조(자격)** 교원 연구지원비 신청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게재(발표) 및 저서·전시발표의 경우 지원범위를 강의전문교수까지로 한다. (개정 2014.05.01)

**제4조(신청)** ① 논문게재와 발표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교원은 통합 정보시스템에 실적물 첨부하여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03.3.26, '07.9.1)(개정 2014.05.01)

② 학회참석 및 발표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교원은 학회참가신청서와 초청장 및 일정표를 첨부하여 4주 이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07.9.1) (개정 2018. 12. 6)

**제5조(승인)** ① 제4조 1항에 대해 담당부서는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12. 6)

② 제4조 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입시기간, 기타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8. 12. 6)

**제6조(업무관장)** 연구지원비 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05.01., 2018.07.16)

**제7조(결과보고 및 연구비 지급일)** ① 제4조 2항에 의한 학술대회 참가보고서는 참가 후 4주 이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6)

② 연구지원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 12. 6)

**제8조(연구비지원)** ① 연구지원비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에 제한은 각 호와 같다. (개정 '03.3.26, '05.2.16, '07.3.5, '07.9.1)(개정 2014.05.01.)(개정 2018. 12. 6)

1. 연구자의 소속이 건양대학교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18. 12. 6)
  2. 일반연구과제 및 명목학술연구과제, 해외연수 결과물 등 본교 교비로 지원받은 연구물은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8. 12. 6)
  3. 논문, 공연, 전시, 창작, 저서 지원비의 경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하며 지원횟수는 지원 신청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8. 12. 6)
  4.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지원비의 지원횟수는 참가 시작일 기준 학년도로 한다.
- ② 연구지원비는 별지에 의하여 연구비를 구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

음과 같다.

제6조 중 “교학처”를 “기획처”로 한다.

##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연구비지원) 제①항 4호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참가한 학술대회부터 소급 적용한다.

교원 연구지원비 지급규정

<별지>

구분		지급 기준		지원 조건													
논문게재 지원	국내	학진등재후보지	8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지원금액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단독연구논문</td> <td>단독연구</td> <td>100%</td> </tr> <tr> <td rowspan="2">2인이상 공동연구논문</td> <td>교신저자, 제1저자</td> <td>2/(n+2)</td> </tr> <tr> <td>공동연구자</td> <td>1/(n+2)</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금액 비율		단독연구논문	단독연구	100%	2인이상 공동연구논문	교신저자, 제1저자	2/(n+2)	공동연구자	1/(n+2)
		구분	지원금액 비율														
	단독연구논문	단독연구	100%														
	2인이상 공동연구논문	교신저자, 제1저자	2/(n+2)														
		공동연구자	1/(n+2)														
		학진등재지	130만원	※ 년 5회 지원(학년도 기준) ※ 공동연구자일 경우, 10인 초과 시 지원불가 ※ SCOPUS Document Type(10종) 중 4종은 지원불가													
국제	SCOPUS	150만원															
	SCIE	200만원															
	SCI	250만원															
	SSCI, A&HCI	300만원															
※ SCOPUS Document Type(10종) 중 4종은 비지원 -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문서종류(6종) : Article, Editorial, Erratum, Letter, Note, Review - 정규논문으로 불인정되는 문서종류(4종) : Article-in-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																	
최우수 논문	TOP	Science Nature Cell 및 이에 준하는 학술지	1,000만원	교신(책임)저자 100%· 제1저자 100% 기타 공동연구자 1/n													
국내·국제 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지원	국제	(발표참가) · 지역구분 없이 주발표자 이상급 50만원  (단순참가) · 단순참가의 경우 30만원		· 외국에서 개최되고 최소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학회의 논문발표자, 좌장, 지정토론자, 사회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지원(증명서류 미 제출시 국제 단순참가 기준액으로 지원) · 논문발표자의 경우 주발표자에게 지급기준액 100% 지원 · 예체능계열은 전시회, 발표회, 공연 등으로 초청 된 경우 지원(초청장 첨부) ·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참가의 경우 30만원 지원 · 논문발표의 경우 동일주제의 중복지원 제한 · 연 1회까지 지원(발표참가, 단순참가 구분 없이 국내와 별개로 연1회 지원) ·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발표참가는 국내 발표참가 지급 기준액으로 단순참가는 국내 단순참가 지급기준액으로 지원 · 학회가 아닌 위원회, 공청회, 협의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참석 및 발표는 비 지원													
	국내	(발표참가) · 학술대회 발표참가 20만원 (단순참가) · 학회단순참가 10만원		· 국내는 연 2회 지원 (발표참가, 단순참가 구분 없이 국제와 별개로 연 2회까지 지원) · 학회가 아닌 위원회, 공청회, 협의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참석 및 발표는 비 지원													
전공과 관련된 전시, 공연, 창작	전시	전국규모 및 일반 개인전	30만원	· 전공에 관한 연구 실적시 1인당 년 간 5회까지 지원 (취미생활로 인한 개인전 및 단체전 지원 안함) · 단독기준 전액 지원, 단체전 일 때 지급 기준액의 30% 지원 · 공인된 단체전이란 5회 이상의 전시회 실적이 있는 협회를 말함 (공인된 단체 증명서류 제출시 지원, 미 제출시 전국규모 및 일반 개인전 지급기준으로 지원)													
		학진등재후보학회 및 공인된 단체 초대 국내전	60만원														
		학진등재지 학회 주최 및 공인 단체 주최 초대 국제전	80만원														
	공연	시 단위이상 공연 500석 미만	30만원	· 시단위 이상 공연이어야 하며 1인당 년 간 5회까지 지원 · 공연 중 각 분야의 감독(연출, 예술, 의상, 극작)의 경우는 단독으로 인정하여 지급기준액 100% 지원 · 감독이 아닌 기타 경우는 지급기준액의 30% 지원													
시 단위이상 공연 1000석 미만		60만원															
시 단위이상 공연 1000석 이상		80만원															
창작	단독	30만원	· 문예진흥원 등록 정규 문예지에 한하여 단독일시 지급기준액 100% 지원 · 1인당 연 2회 지원														
저서 발간		초판 50만원		· ISBN등록 전공저서, 1인 당 연 2회 까지 지원, 저자수에 따라 1/n로 지원													